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연진**

【목 차】

I. 서론

II.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과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개정과정
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

III.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3. 글로벌 스탠다드와 개인정보 보호법

IV.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평가

1. 서설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평가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평가

V. 결론

【국 문 요 약】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은 방대한 정보를 기초로 발전을

* 이 논문은 소속 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으시는 배병호 교수님의 정년기념호에 줄고를 게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연구원, 법학박사(S.J.D.)

거듭하고 있다. 신기술 발전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의 증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실질적인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신설이다. 이는 2016년 EU GDPR에 이미 도입된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제로 손꼽혔던 부분이었고,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며, 민감정보에 근거한 자동화된 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 반대권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I. 서론

2022년 12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 이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의 발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계가 인간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인지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

1)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질문을 채팅하듯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에 맞춰 곧바로 답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공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으며, 난이도 높은 학술논문, 에세이, 시, 보고서 등을 단숨에 써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행해내고 있다.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353), 2023. 2. 28. 제안이유.

력, 이해 능력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²⁾ 오늘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제 마련이 급부상 과제로 되었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은 방대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국가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³⁾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상호 긴장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이러한 법제마련의 필요성에 부응하듯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016년 제정된 EU 일반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손꼽히는바, 개정법에 대한 평가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중심으로 수행하기로 하며, 이와 함께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완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제32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20), 43-44면.

3) 이한주·권건보·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8), 2면.

4)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2011), 365-366면.

II.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과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개정과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⁵⁾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⁶⁾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적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⁷⁾

일찍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은 2003년 전자정부 30대 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제17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제안된 대안이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⁸⁾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제2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제7조 및 제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제25조), 개인정보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제정이유.

6) 성낙인, 헌법학(제20판), 법문사(2020), 1346면;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결정.

7) 한수웅, 헌법학(제10판), 법문사(2020), 573면.

8)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과 추진체계”,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2011), 1면.

영향평가제도 도입(제33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단체소송의 도입(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제62조)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⁹⁾

2015년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제8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 제1항, 제40조 제3항·제4항 및 제63조 제4항)¹⁰⁾,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제39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¹¹⁾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여(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의 수준을 상향시키도 하였다.¹²⁾

이러한 개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부개정과 타법개정을 포함한 총 15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2020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여 개정되었다.¹³⁾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1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 이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2), 255면.

11) 2015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제32조의2),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 또한 강화되었다(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7호, 2016. 3. 29., 일부개정].

호법」에서는 가명처리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으며(제2조 제1호의2), 개인 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제28조의2, 제28조의3).¹⁴⁾

1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0년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14)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제28조의4)이 신설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이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

2023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 14일 공포되었다. 2023년 개정안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수립된 개정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이 국회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특히 개인정보 이동권, 동의제도 및 처리방침 개선과 관련하여 학계·산업계·시민단체의 합의가 도출되었다.¹⁶⁾

2023년 개정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동의 제도 개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¹⁷⁾

특히 개정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¹⁸⁾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보도자료(2023. 3. 7.), 1면.

16)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부안은 2020년 12월 23일 확정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2020. 12.31.-2021.1.18.), 4차위 해커톤(2023.1.19.-20.), 입법예고(1.6.-2.16.), 산업계 의견 청취(1. 15.), 시민단체 의견 청취(1.25.) 및 이후에 열린 산업계 의견 청취(2.23.), 공청회 개최(2. 8.),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4.9.), 법제처 심사(4.20.-7.27.)를 거쳤다. 이후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21.9.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2021.11.23., 2022.11.15., 2022.11.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2.12.5.), 법사위원회 전체회의(2023.1.16., 2.16.), 본회의 의결(2023.2.27.)을 거쳐 공포되었다(2023.3.14.).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보도자료(2023. 3. 7.), 8-17면.

III.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분야에 있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이와 달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지 않아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보주체인 시민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²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였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의2).²¹⁾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보도자료(2023. 3. 7.), 1-4면.

19) 「신용정보법」 [시행 2021. 8. 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정·개정이유].

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0400) 제안이유.

2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5조의2 제3항)²²⁾ 정보주체는 전송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의2 제7항).²³⁾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제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2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2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²⁴⁾

다.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종전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었다.²⁵⁾

그런데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단순히 특례의 형태로 이전·병합되었고,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의무규정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²⁶⁾

이에 따라 2023년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특례규정

2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추경호의원 등 13인), 정무위원회, 2023. 2. 13면.

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정무위원회, 2021. 2. 13면.

대부분이 삭제되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하게 규율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였다.²⁷⁾ 이와 더불어, 제6장 규정 중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되었다.²⁸⁾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가. 형식적 동의 제도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다른 유사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홈쇼핑회사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³⁰⁾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추경호의원 등 13인), 정부위원회, 2023. 2. 14면.

28) 예컨대, 종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이었던 제39조의11이 삭제되는 대신 개정법에서는 제31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실효성이 낮은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39조의14는 삭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보도자료(2023. 3. 7.), 11면.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9면.

2023년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불가피하게”를 삭제함으로써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요건을 활성화하였고,³¹⁾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제15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코로나19등 공중위생 목적인 경우도 수집·이용 요건에 추가하였다.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았다(제58조 제1항 제3호).³²⁾ 그러나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15조 제1항 제7호 및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개정법에 신설된 데에는 쏘카의 수사 비협조로 발생한 초등학생 성범죄 피해사건이 작용하였다.³³⁾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

31)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제39조의3)을 정비하여 ‘동의 만능주의’ 현상을 개선하였다.

32)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33) 2021년 경찰은 성범죄 용의자가 쏘카 차량에 피해 아동을 태워 이동한 것을 확인, 쏘카 측에 용의자 개인정보를 구두로 요청했으나 쏘카는 “영장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 경찰은 7일 저녁 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8일에 용의자 정보를 제공했다. 쏘카의 느장 대응으로 범위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박재욱 쏘카 대표는 “경찰 수사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뉴스24, “[IT돋보기] ‘쏘카 사태’ 막으려면 영장 없이 개인정보 쥐야 할까”, 네이버뉴스(2021. 2. 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584160?sid=105>.

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카가 보관하고 있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으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³⁴⁾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는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였는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⁵⁾

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 설명 등 요구권을 부여하였다(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³⁶⁾

34)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록 제2호, 국회사무처(2021. 2. 17.), 78면.

35)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³⁷⁾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제37조의2에 규정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되었다.³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³⁹⁾

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종래 「개인정보 보호법」상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었으며(제43조 제3항)⁴⁰⁾,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 조사권이 없었다(제45조)⁴¹⁾. 또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보도자료(2023. 3. 7.), 3면.

38) 2023년 1월 16일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행정기본법」의 ‘자동적 처분’과 충돌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2월 16일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행정기본법」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2023. 1. 16.), 13면,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2023. 2. 16.), 20면.

39)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40)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 신청 등)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41)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다(제47조 제3항).⁴²⁾

이에 따라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기존의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분쟁조정의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였으며(제43조 제3항)⁴³⁾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추가하였다(제45조 제2항).⁴⁴⁾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제45조의2)⁴⁵⁾ 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종래의 ‘조정거부’가 아닌 ‘수락 간주’로 전환하도록 개정되었다(제47조 제3항).⁴⁶⁾ 개정법은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활성화, 실효성 확보 및 자율성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 사적목적 이용 금지

종래에는 개인정보를 사적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2)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4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 신청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4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5)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46)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었고⁴⁷⁾ 이에 따라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제59조 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⁴⁸⁾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⁴⁹⁾

3. 글로벌 스탠다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개정법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였으며,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개인정보 국외이전(Transborder Data Flows)은 개인정보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달될 때 해당 국가들에 사생활보호

47)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4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49)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에 관한 충분한 보호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보는 관련 국가들 내에서 가능한 한 자유롭게 전달, 처리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일찍이 1990년 12월 14일 UN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의 원칙에 반영되었다.⁵⁰⁾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수 있었으나⁵¹⁾ 2023년 개정을 통해서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② 법률, 조약, 국제협정의 특별한 규정, ③ 계약체결,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한 경우로서 처리방침에 공개 또는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경우, ④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28조의8 제1항).⁵²⁾

50) 1990년 12월 14일 UN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은 ① 합법성과 공정성 원칙(Principle of Lawfulness and Fairness), ② 정확성원칙(Principle of Accuracy), ③ 목적 구체성원칙(Principle of the Purpose-specification), ④ 관련개인에 의한 접근원칙(Principle of Interested-person Access), ⑤ 비차별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⑥ 예외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관(Power to make Exceptions), ⑦ 안전(보안)원칙(Principle of Security), ⑧ 감독과 제재(Supervision and Sanctions), ⑨ 개인정보 국외이전(Transborder Data Flows), ⑩ 적용범위(Field of Application)의 원칙을 담고 있다. 김일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내용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2013), 129-131면.

5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와 더불어 ① 개정법 제28조의8 제1항, 제4항, 제5항의 국외이전 요건을 위반하거나, ②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국가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호수준에 비하여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다(제28조의9).⁵³⁾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의 국가 간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 EU, 미국 등과의 법정합성이 확보되었고,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통해 국외이전에 따른 안전망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

개정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벌을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예컨대, 종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71조 제4호의5)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2023년 개정법에서는 제71조 제4호의5를 삭제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일반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다(제71조 제4호의4 삭제).

이와 더불어, 제6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였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다만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함으로써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⁵⁴⁾

개정법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제64조의2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⁵⁵⁾

한편,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감경하더라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 시 기준점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법에 반영되었다.⁵⁶⁾

5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55)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사무처(2022. 1 1. 15.), 55면.

56)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사무처(2022. 1

IV.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평가

1. 서설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 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식적 동의제도 개선(제15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제25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제30조의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제35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제37조의2),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제6장 개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 부터 제47조), 개인정보 사적목적 이용 금지(제59조 제3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제28조의8, 제28조의9),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제64조의2, 제71조)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규정도 개선되었다. 종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범위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3년 개정법에서는 ‘손해액의 3배’가 ‘손해액의 5배’로 상향됨으로써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⁵⁷⁾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신설이다. 이는 지능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EU GDPR에 규정된 내용이 2023년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EU GDPR과의

1. 15.), 55면.

57)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실손해가 적은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으므로 미국 일리노이 주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진·김일환,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2022), 576면.

비교를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에 집중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평가

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⁵⁸⁾ 예컨대, 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는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의 재생목록(playlist)을 받아서 어떤 음악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알 수 있고, 다른 플랫폼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낼 수 있으며, 어떤 포인트 적립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서 소비활동에 이용할 수도 있다.⁵⁹⁾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환경이 프로파일링과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만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⁶⁰⁾

나. EU GDPR과의 비교

2016년 제정된 EU GDPR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EU GDPR은 전송가능한 정보의 요건으로 ①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계약에 근거해서 처리되는 개인데이터(EU GDPR 제20조 제1항(a)), ②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데이터(EU GDPR 제20조 제1항(b)), ③ 정보주체가 제공한 데이터(EU GDPR 제20조 제1항 본문)를 규

58)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211면.

59)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P 242, rev.01, April 5, 2017, 5.

60) 권건보·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2019), 7면.

정하고 있다.⁶¹⁾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⁶²⁾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이행을 이유로 삭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EU GDPR 제20조 제3항)⁶³⁾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EU GDPR 제20조 제4항).⁶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송가능한 정보의 요건으로 ① 정보주체의 동의(제3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②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제3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③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제3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제35조의2 제1항 제2호), 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61) EU GDPR Article 20(Right to data portability)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he or she has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have the right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controller without hindrance from the controller to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provided, where:

(a) the processing is based on consent pursuant to point (a) of Article 6(1) or point (a) of Article 9(2) or on a contract pursuant to point (b) of Article 6(1); and

(b) 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by automated means.

62) EU GDPR Article 20(Right to data portability) 2. In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data portabilit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personal data transmitted directly from one controller to another, where technically feasible.

63) EU GDPR Article 20(Right to data portability) 3. The exercise of the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7. That right shall not apply to processing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task carried out in the public interest or in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vested in the controller.

64) EU GDPR Article 20(Right to data portability) 4. The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not adversely affect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처리되는 개인정보(제35조의2 제1항 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제35조의2 제2항).

즉, EU GDPR과는 달리 개정법은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전송요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행사대상으로 개정법 제35조의3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가 삭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제35조의2 제5항) 이러한 부분도 EU GDPR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	EU GDPR(제20조)
전송 대상	-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전송가능 정보의 요건	-동의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동의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가 시행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제공한 데이터
타인의 권리 침해 방지 규정	타인의 정당한 권리·이익 침해하지 않을 것 (제7항)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제4항)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철회 규정	철회 가능(제5항)	철회권 규정 없음
삭제권 규정	삭제권 관련 규정(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가 삭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없음	삭제권 규정 있음(제3항)

< 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요구권과 EU GDPR 비교 >

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보완책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돌려받을 ‘정보환수요구권’과 정

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었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로 이송하도록 하는 권리인 ‘정보이송요구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U GDPR 역시 ‘정보환수요구권’과 ‘정보이송요구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보이송요구권’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IT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그런데 ‘정보이송요구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되며, EU GDPR을 제외한 다른 법제에서 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낮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⁶⁶⁾ 이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되, EU GDPR 적용례를 지켜본 후 도입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⁶⁷⁾

개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정보이송요구권’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이른바 본인 다운로드권, 즉 ‘정보환수요구권’만 인정하자는 산업계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⁶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서는 결국 ‘정보이송요구권’과 ‘정보환수요구권’이 모두 반영되었는바, 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금융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해 2년여의 시간에 걸친 상당한 시스템 개·보수가 이루어진 바 있듯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실현을 위한 플랫폼

65) 송미정·김인석,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9권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2019), 1207면.

66) 권건보·김일환, 앞의 논문, 28면.

67) 권건보,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2018), 35-37면.

6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2022. 11. 22.), 14면.

구축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 GDPR Recital (68)에서는 정보관리자에게 정보이동권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통용 가능한 포맷(interoperable format)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기도 하였다.⁶⁹⁾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럽연합에서 도입·활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관리시스템(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또는 개인정보저장소(PDS: Personal Data Store)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기업 간 데이터 이동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며, 일본도 개인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대리인으로서 정보은행을 두고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⁷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동권 행사 동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의 개발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⁷¹⁾ 이에 따라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²⁾

69) 권건보·이한주·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2018), 8면.

70) 조영은·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767호, 국회입법조사처(2020), 3면.

71) 조성은, “해외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2020. 9. 1.

7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한 제35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고 부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2,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7, 제60조제5호, 제75조제2항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평가

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지능정보사회가 시작된 이래 재정, 고용, 정치, 의료, 복지 서비스에서의 의사 결정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점차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고 기계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⁷³⁾ 그러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게 되는 상황이 보편화된다면 인간의 역할과 존재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⁷⁴⁾

이에 따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면접, 복지 수혜자격 결정⁷⁵⁾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국민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 것이다.

나. EU GDPR과의 비교

EU GDPR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질 경우 그 결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⁷⁶⁾ 다만, (a)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간에 계약을 체결 또는

73) Virginia Eubanks, 자동화된 불평등: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Automating Inequality: How high-tech tools profile, police, and punish the poor), 김영선 역, 북트리거(2018), 18면.

74) 김일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7), 40면.

75)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뉴스1, “송파 세모녀 사건 9주기...시민단체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하라’”, 네이버뉴스(2023. 2. 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50153?sid=102>.

76) EU GDPR Article 22(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b)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c)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될 수 있다(EU GDPR 제22조 제2항).⁷⁷⁾

또한, 계약의 목적, 명시적 동의에 따른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적 개입을 확보하고 본인의 관점을 피력하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EU GDPR 제22조 제3항).⁷⁸⁾ 한편, 민감정보에 근거하여 내려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금지되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그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EU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중요한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라도 허용될 수 있다(EU GDPR 제22조 제4항).⁷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EU GDPR 제22조와 큰 맥락상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법률상의 근거, 명시적 동의에 따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

similarly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her.

77) EU GDPR Article 22(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decision: (a) is necessary for entering into,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a data controller; (b) is authorised by Union or Member State law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and which also lays down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rights and freedoms and legitimate interests; or (c) is based on the data subject's explicit consent.

78) EU GDPR Article 22(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3.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c) of paragraph 2, the data controller shall implement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rights and freedoms and legitimate interests, at least the right to obtain human intervention on the part of the controller, to express his or her point of view and to contest the decision.

79) EU GDPR Article 22(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 4. Dec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not be based on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Article 9(1), unless point (a) or (g) of Article 9(2) apply and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rights and freedoms and legitimate interests are in place.

할 수 없다(제37조의2 제1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37조의2 제3항). 이러한 규정은 EU GDPR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제37조의2 제2항),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해야 하며(제37조의2 제3항),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7조의2 제5항) EU GDPR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과 달리 민감정보에 근거하여 내려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감정보는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로, EU GDPR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EU GDPR 제9조 제1항).⁸⁰⁾ 「개인정보 보호법」도 제23조 제1항⁸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80) EU GDPR Article 9(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1.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or trade-union membership, and the processing of genetic data, 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data concerning health or data concerning a natural person's sex lif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prohibited.

8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⁸²⁾ 이러한 EU GDPR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고려해볼 때, 민감정보에 근거하여 내려진 자동화된 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³⁾

다. 프로파일링 반대권 신설 여부

EU GDPR 제21조는 프로파일링 반대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주체가 지능정보사회에서 알고리즘 추론(algorithmic inference)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에서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의 습관이나 행태까지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⁸⁴⁾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이 공익적 목적이거나 공공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우월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자신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그러한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익과 자유에 우선하는 처리를 위하여, 소송의 제기과 방어를 위하여 강력한 정당화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이 계속 수행될 수 있다(EU GDPR 제21조 제1항).⁸⁵⁾ 개인정보

82)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청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은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일환,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유럽헌법학회(2019), 526면.

83) 물론, EU GDPR 제22조 제4항과 같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 중요한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감정보에 근거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84) 권건보·김일환, 앞의 논문, 24면.

85) EU GDPR Article 21(Right to object)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object, on grounds relating to his or her particular situation, at any time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which is based on points (e) or (f) of Article 6(1), including profiling based on those provisions. The controller shall no longer process the personal

가 다이렉트 마케팅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는 그 마케팅을 위해 자신에 관한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EU GDPR 제21조 제2항).⁸⁶⁾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EU GDPR 제21조의 프로파일링 반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반대권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에 포섭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⁸⁷⁾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제1문),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⁸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처리의 정지 요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data unless the controller demonstrates compelling legitimate grounds for the processing which override the interests,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or for the establishment, exercise or defence of legal claims.

86) EU GDPR Article 21(Right to object) 2. Wher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for direct marketing purposes,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object at any time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 for such marketing, which includes profiling to the extent that it is related to such direct marketing.

87) 권건보·김일환, 앞의 논문, 30면.

88)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프로파일링 반대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⁹⁾

그러나 향후 지능정보사회에서 프로파일링이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차지할 압도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프로파일링’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⁹⁰⁾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프로파일링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챗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개정 방향에 대하여 챗GPT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라는 답변을 제시하였다.⁹¹⁾ 챗GPT의 답변이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챗GPT의 답변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이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의료와 바이오산업, 지능형 금융과 유통 등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자원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⁹²⁾ 반면,

89)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90) 권건보·김일환 외,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121면.

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인간의 자율적인 주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인공지능 등이 탑재된 정보처리기가 그러한 결정을 대신하게 된다면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⁹³⁾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사생활침해를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⁹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제의 정비는 요구된다. 지능정보기술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조화가 필요하고, 헌법조화적이고 인간지향적인 정보질서를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의 자유보장, 국민의 민주적 참여,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통제 등을 적도로 삼아 법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⁹⁵⁾

2023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가 도입되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주요사항으로 손꼽히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개정은 2016년 제정된 EU GDPR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온·오프라인 규제의 일원화, 형식적 동의 제도 개선 및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 개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모두 신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92) 2012년 한 평가에 의하면,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는 2020년까지 매년 1조 유로 (€1 trillion)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1/3은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돌아가고, 2/3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김서안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1권 제4호, 중앙법학회(2019), 8면.

93) 권건보·김일환, 앞의 논문, 25면.

94) 김일환, “情報社會에서 個人情報保護機關의 權限과 機能에 관한 類型別 考察”, 토지공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2002), 131면.

95) 김일환, “情報社會에서 基本權制限概念의 擴大必要性에 관한 考察,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2003), 186-187면.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며, 제37조의2에 민감정보에 근거한 자동화된 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파일링 반대권은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논문투고일: 2023.5.28., 심사개시일: 2023.6.12., 게재확정일: 2023.6.26.)



▶ 김연진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참 고 문 헌】

I. 단행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 성낙인, 「헌법학(제20판)」, 법문사(2020).
- 한수웅, 「헌법학(제10판)」, 법문사(2020).
- Virginia Eubanks, 자동화된 불평등: 첨단 기술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가(Automating Inequality: How high-tech tools profile, police, and punish the poor), 김영선 역, 북트리거(2018).

II. 논문

- 권건보,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2018).
- 권건보·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2019).
- 권건보·김일환 외,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 권건보·이한주·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2018).
- 김서안·이인호,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이동권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중앙법학 제21권 제4호, 중앙법학회(2019).
- 김연진·김일환,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2022).
- 김일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내용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2013).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과 추진체계”, 한국정보법학회 정기 세미나 발표자료(2011).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2).
-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2011).
- 김일환,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유럽헌법학회(2019).
- 김일환, “情報社會에서 個人情報保護機關의 權限과 機能에 관한 類型別考察”, 토지공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2002).
- 김일환, “情報社會에서 基本權制限概念의 擴大必要性에 관한 考察”,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2003).
-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제32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20).
- 김일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7).
- 박현일, “정보이동권의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원(2017).
- 송미정·김인석,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9권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2019).
- 이한주·권건보·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8).
- 조성은, “해외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2020. 9. 1.
- 조영은·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논점 제1767호, 국회입법조사처(2020).

Abstract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Younjin Kim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ontinuing to develop based on vast amounts of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lso has the advantage of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it is concerne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violated due to the profi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crease in automated decision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need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merged, and in March 2023, substantial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mainly includes strengthening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was revised to meet the global level. In the revised law,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the right to automated decisions are noteworthy. These rights were already introduced in the 2016 EU GDPR and were considered revised task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y being reflected in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23.

In the futu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platforms to specifically realiz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d regulation that prohibits automated decisions based on sensitive information, in principle. There is no need to stipulate the right to object profiling, but an amendment is required to specify the provision including ‘profiling’ in Article 37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 **Younjin Kim**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Automated Decision